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71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대학교원 채용의 양성평등)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제4조의4 관련)

해당연도	여성 비율(%)
1. 2021년도	18.3
2. 2022년도	19.1
3. 2023년도	19.8
4. 2024년도	20.6
5. 2025년도	21.4
6. 2026년도	22.2
7. 2027년도	22.9
8. 2028년도	23.6
9. 2029년도	24.3
10. 2030년도 이후	2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제4조의4(대학교원 채용의 양성평등)</u> <u>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교원의</u> <u>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u> <u>별표 1과 같다.</u>

〈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3-7115